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치료를 위한 청원휴가 신설〉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치료를 위한 청원휴가 신설〉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31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양부남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양부남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II.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6

I. 개 요

【양부남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8.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양부남의원안】 (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8.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Ⅱ.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를 신설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71조제2항), 해당 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71조제4항), 휴직기간 1년(안 제72조제1호), 임기제공무원·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게도 해당 휴직 인정(안 제71조제3항, 안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① (생략)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4호</u>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 ----- ----- ----- <u>제4호와 제4호의2</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u>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5. ~ 7. (생 략)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 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2. ~ 10. (생 략)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5. ~ 7.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제4호·
제4호의2-----
-----.

④ -----제2항제4호 또는
제4호의2-----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휴직 기간) -----
-----.

1. 제71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
-----제2

<u>제4호</u>,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 · 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 ·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 <u>제5호</u>,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 · 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u>항제4호 · 제4호의2</u>----- ----- -----. ② ----- ----- -----<u>제4호의2 · 제5호</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상 휴직의 종류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권에 따라 명하는 직권휴직(제71조제1항)과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청원휴직(제71조제2항)으로 구분됨.²⁾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휴직사유 및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

구분	휴직사유	기간
직권 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기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3월 이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청원 휴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자료: 인사혁신처

현행법상 불임·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휴가·휴직제도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여성: 시술에 따라 2~4일, 남성: 정자 채취일 당일)를 규정하고 있으며,³⁾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임용규칙」에서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질병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⁴⁾

현행법상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의 일종인 반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가족계획 등 공무원 개인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에서 이미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⁵⁾ 현행법에도 이와 같이 불임·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4)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관련 제도에서 출산·양육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이를 반영한 입법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관련 현행 제도와 발의안 비교》

구 분	현행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규칙」)	양부남 의원 발의안
휴직유형	질병휴직(직권휴직)에 포함	난임휴직(청원휴직)으로 분리
휴직기간	1년+1년	좌동
적용범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
휴직승인	현행 미규정	임용권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임·난임휴직 승인 의무 부여
처우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미적용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적용
결원보충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 가능 ⁶⁾	관련 사항 미규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 6)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이미 출산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직장에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되는데,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제도의 목적과 성격, 인사운영의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안 제72조제1호)에서는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을 질병휴직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질병휴직과 분리하여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규정할 경우, 휴직기간에 관한 사항도 호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셋째, 정무직 공무원⁷⁾은 선거 또는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임기가 정해지거나 신분이 변동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휴직 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신설에 동의하면서, 용어의 적정성(불임·난임→난임), 휴직 기간의 별도 규정 필요성, 그리고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안 제71조제4항)은 육아휴직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난임 휴직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42

